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1564
----------	------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과 현행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
- 성남시의 출연금으로 설립·운영되고 있는 법인체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제5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 - 5.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성남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(성남산업진흥재단, 성남시문화재단 등)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성남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
- 성남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함

□ 검토결과

- 성남시의 출연금으로 설립·운영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및 성남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동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관련규정과 동조례의 관련규정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동조례의 개정예 문제점이 없음